이 보도자료는 7. 11.(목) 12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이 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
PROSECUTION SERVICE

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

공보담당관 지청장 최종무
전화 054-820-4310

보 도 자 료

2019. 7. 11.(목)

자료문의 : 안동지청장실
전화번호 : 054-820-4310
주책임자 : 지청장 최종무

제목 신종 가상화폐거래소('인트비트') 사기 등 사건 수사결과

▣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(지청장 최종무)은, 경북도청 신도시에서 '인트비트'라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면서 '**청약 방식의 가상화폐 배당**' 명목으로 **38명의 고객들로부터 총 56억 원의 예치금을 송금받아 편취**하고 그 중 **약 14억 원**을 **횡령**한 위 거래소의 **전현직 대표이사 2명**을 **구속 기소**하였음

※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자 수는 총 191명으로, 나머지 피해자들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추가 기소 예정

▣ '인트비트' 운영자들은 임직원 명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하여 가격이 급등할 것처럼 보이도록 거래량을 조작하면서, 고객들을 상대로 '**일정 기간 동안 청약 계좌에 예치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가상화폐를 배당하고 외제차, 금 등 경품도 지급하겠다**'고 유인하였고,

- 고객들이 예치한 돈의 일부를 **개인채무 변제, 생활비, 임직원 급여 등으로 임의 사용**한 것으로 드러남

▣ 안동지청은 피해 신고 직후 안동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거래소 공동운영자인 피의자들을 구속하는 한편, 피해 회복을 위해 **피의자들 보유 가상화폐, 현금 등 총 2억 원 상당**을 **압수**하였고, **압수한 금품에 대하여는 부패재산몰수법에 의거하여 추징보전 청구**하였음

1 수사 경과

- '19. 4. 20. 가상화폐거래소 '인트비트' 예치금 출금정지 및 사무실 폐쇄
- '19. 4. 26. 피해자 최초 고소, 안동경찰서 수사지휘 및 범죄피해회복 방안 협의 진행

  ※ 현재 피해 신고 총 191명(경찰 고소 161명, 검찰 고소 30명)
- '19. 6. 4. 안동경찰서, (주)△△△홀딩스 現 대표이사 A○○ 구속
- '19. 6. 5~9. 피의자들 보유 가상화폐 시가 1억 8,000만 원 상당 압수
- '19. 6. 13. 안동경찰서, A○○ 구속 송치
- '19. 6. 21. 안동경찰서, (주)△△△홀딩스 前 대표이사 B○○ 구속

  ※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B○○ 보유 현금 2,100만 원 가량 추가 압수
- '19. 6. 28. 안동경찰서, B○○ 구속 송치
- '19. 7. 2. 대구지검 안동지청, A○○ 구속 기소
- '19. 7. 11. 대구지검 안동지청, B○○ 구속 기소

  ※ B○○의 (주)△△△홀딩스 명의 예치금에 대한 횡령 추가 인지 및 압수한 금품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

2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순번	성명	직업	범죄사실 요지	처분 내용
1	A○○ (28세)	(주)△△△ 홀딩스 現 대표이사	▪ 가상화폐 거래소('인트비트')를 운영하면서, '19. 3~4.경 ① 실제보다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한 후, ② 허위 매도·매수로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하여 가격이 급등할 것처럼 외관을 만들면서, ③ 청약금의 액수에 비례하여 가상화폐를 배당해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청약금 명목으로 총 56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 [사기]	구속구공판 ('19. 7. 2.)

2	B○○ (38세)	(주)△△△ 홀딩스 前 대표이사	▪ 가상화폐 거래소('인트비트')를 운영하면서, '19. 3~4.경 ① 실제보다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한 후, ② 허위 매도·매수로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하여 가격이 급등할 것처럼 외관을 만들면서, ③ 청약금의 액수에 비례하여 가상화폐를 배당해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청약금 명목으로 총 56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 [사기] ▪ (주)△△△홀딩스의 실질적 대표로서, '19. 1~5.경 고객 예치금 등 위 회사 자금 총 13억 8,000만 원 상당을 개인채무 변제,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	구속구공판 ('19. 7. 11.)

3 수사 결과

▣ '청약' 방식을 도입한 신종 가상화폐거래소의 사기 등 행태 확인

- '청약 방식의 가상화폐 배당'은 최근 군소 가상화폐거래소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방식으로서,

  - 일정 기간(청약 기간) 동안 고객들이 일정 금원을 예치하면 전체 청약금 대비 해당 고객이 예치한 금원의 비율로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생 가상화폐를 배당해 주고, 나머지 금원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반환해 준다는 것임

  - 자체 가상화폐를 개발하거나 이미 고가에 이른 가상화폐를 중개하는 기존 방식의 경우 많은 자본이 필요한 반면, '청약' 방식의 경우 **소규모 거래소에서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고액의 예치금을 유인할 수 있는 장점**이 있음

- 피고인들은 거래소 홈페이지, 문자메시지,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'**낮은 가격의 신생 가상화폐를**

배당하므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, 나머지 예치금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반환해 준다'고 홍보하면서, 청약금의 액수에 비례하여 외제차, 금, 기프티콘 등 경품을 제공한다고도 하였음

- 또한, 고객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거래소 운영진들 명의로 가짜 계정을 만들어 허위 매도, 매수 주문을 반복함으로써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거래가 활발하여 가격이 급등할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음

-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불과 1달 여 기간 동안 350명의 고객들로부터 총 250억 원 상당의 청약금을 유치할 수 있었음

● 피고인들은 청약금을 유치한 후 당초 약속보다 훨씬 적은 양의 가상화폐(약 0.02%)만 배당하였고, 외제차 등 경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, 청약금을 회사 운영비, 변호사 비용,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음

- 피고인들은 고객들이 청약금으로 예치한 금원 중 일부(50%~70%)만 단기간에 출금 요청하는 점을 악용하여 나머지 청약금을 임의 사용하였고,

- 거래소 폐쇄 직전까지 청약을 반복 실시하여 자금을 확보한 후 서버점검을 이유로 출금업무를 정지한 채 약 10억 원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음

▣ 다수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압수, 동결조치 등 시행

●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피해 신고 접수 직후, 대검찰청 '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'의 지원 하에, 안동경찰서와 피해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,

- 피고인들 보유 가상화폐가 서버운영위탁업체에 잔존함을 파악하고, 1억 8,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현금 2,100만 원 가량을 압수하였음

● 나아가 피고인들을 구속기소함과 동시에 위 압수품에 대해서는 고객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'부패재산몰수법'에 의거하여 추징보전 청구하였음 ▨